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8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12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8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확대된 ‘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’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는 변경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정비하여 현행화 함.
 - 안 제2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대상을 신설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.
- 검토 결과
 - 동 조례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. 11. 8. 제정된 바 있으나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2021.11. 30. 전부개정 된 이후 정비되지 않았음.
 - 「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」는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해 2023. 3. 27. 일부개정 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, 이에 따라 서울시 및 4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음.
 - 따라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일괄정비와 동시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선제적 화재 예방 도모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8. .

발의자: 이성수, 유승용, 이순우
전승관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확대된 ‘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’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노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8. 19. ~ 8. 23.)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”를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바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사. 「건축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아.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자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”을 신설하고, 같은 호 바목을 차목으로 한다. 같은 조 제2호에서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”를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화재안전취약가구”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<u>제10조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「<u>다문화가족지원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사. 「<u>건축법</u>」 제2조제5호에 따른 <u>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아. <u>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자. 「<u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18조에</p>

<p>바. (생략)</p> <p>2. “주택용 소방시설”이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</p>	<p><u>다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</u></p> <p>차. (현행 바목과 같음)</p> <p>2. ----- 「<u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0조에 ----- -----.</p>
--	--